##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7371 제출연월일: 2025. 1. 9. 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,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,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'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'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1항 후단 중 "신고내용"을 "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2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(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① 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 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86조의2제5호 중"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"를"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"로 한다.

제8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전단 중 "제5항제3호"를 "제6항제3호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제5항제2호" 를 "제6항제2호"로 한다.

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85조제4항 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승계한다"를 "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"을 "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(피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동의를 얻어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30조제4항제9호 중 "제89조제5항"을 "제89조제6항"으로 한다. 제132조제1항제4호 중 "제89조제5항"을 "제89조제6항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신고확인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)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이후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6조(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)	제86조(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)
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	①
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	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	
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	
야 한다. <u>신고내용</u> 을 변경하거	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
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.	<u>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<u>제2</u>	(5) <u>ম</u> া4
<u>항</u>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	<u>ठ</u> ो
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	
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	
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	
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	
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	
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	
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	
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	
다.	<b>.</b>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	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
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	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

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 야 한다.

<신 설>

제86조의2(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)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 회 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, 그 사본을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

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 리한 경우(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)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렁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확인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① 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86조의2(농어촌민박사업자의
준수사항)
·.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
<u>조</u>

하여야 한다.

6. (생략)

제89조(사업장 폐쇄 등) ① (생략)

<신 설>

#### ② ~ ⑤ (생 략)

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 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, 사업자 또는 대 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 제할 수 있다. 제5항제2호에 따 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90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

<u>.</u>
6. (현행과 같음)
제89조(사업장 폐쇄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
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8
5조제4항 또는 제86조제9항에
따른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
<u>한다.</u>
$\underline{3} \sim \underline{6}$ (현행 제2항부터 제5
항까지와 같음)
<u>⑦</u> <u>제</u> 6
<u>항제3호</u>
<u>제6항제2호</u>
제90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
계) ①

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 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 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<u>승계한다</u>.

- 1. (생략)
- 2. 제87조제1항에 따라 <u>농어촌</u> 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

②·③ (생략) <신 설>

	<u>-</u>	처분	이 있	은	날부	-터
<u>1년간</u>	승계	<u>한다</u> .				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승계한 -----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 광휴양지사업자(피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동의를 얻어 제89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미리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30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130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	
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	
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제89조제5항</u> 에 따라 관계 공	9. <u>제89조제6항</u>
무원이 붙인 게시물・봉인 등	
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	
거나 손상한 자	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제13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132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	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	
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89조제5항</u> 에 따른 조치를	4. <u>제89조제6항</u>
방해한 자	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